

일본군의 한국인 군위안부 강제동원:
전위안부 증언은 중심으로

한일합동연구회 발표요지
1993.8.9 정진성

I. 서

0 강제동원: 강제연행 / 강제사역

0 강제배경: 정책으로서의 군위안부 동원

- 군위안부제도가 하나의 국가정책으로서 기획, 시행된 것은 확실
- 위안소의 기획 - 설립의 목적, 설립계획에 관한 자료
- 위안소설립 및 운영 - 군이 직접 / 민간에 운영위임 / 민간위안소 편입(자료, 증언)
- 위안부 동원 - 모집인의 인선 등에 관한 자료

0 제도의 강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:

- 위안소제도의 규모: 대규모 - 자료, 증언
 - 위안부의 대상: 식민지조선인이 대다수 - 자료, 증언
- 식민지조선인을 동원할 의도 - 간접자료(헌법정체동)

II. 강제연행

(1) 증언에 나타난 연행의 형태

0 연행인 및 연행방식

연행방식	폭력	위협사기	유괴납치	판인	기타
연행인					
민간인		8	2	1	
관	2				
군인, 경찰	5	1	1		1
군속	1	5			

주: 1차 증언집에 실린 19명과 그후 조사가 완료된 6명을 합친 25명의 경우.

2명의 경우에 각기 2번의 다른 연행과정을 겪었으므로 전체 합계가 27이 됨.

기타는 군도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도망 중 잡힌 경우.

- 민간인에 의한 연행의 경우에도 군이 배나 브리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, 중도에 군인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강간하는 등, 군대의 간섭과 통제가 가해졌다.
-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, 큰 차이는 아니다.

0 연행대상 및 계약체결

- 연행대상에 대한 기준 및 계약체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. - 공상제도와 다름.
- 연령제한이 없었다.

연령	11	14	15	16	17	18	19	20	21	22	세
수	1	3	4	5	6	2	2		1	1	명

주: 1차 증언집에 실린 19명과 그후 조사가 완료된 6명을 합친 25명의 경우.

- 25명 중 1명이 결혼한 상태에서 연행되었다.
- 정식의 계약체결을 한 경우는 없었다.

——> 전반적으로 폭력 또는 사기에 의한 강제연행

(2) 당시상황: 간접자료

① 일제시기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무등원

법령에 의한 강제: 상동원법, 학도군로령, 국민근로보국법령, 국민징용령,
여자정신근로법 등.

관에 의한 강제: 모집-형식상 자유이나 관의 적극적인 개입(예: 住友堂 徵兵 勸告 内 務 省의 조선인 모집 경우)

관할선- 여자노원의 경우: 상동원법, 여자정신근로법의 시행 불가.

사기, 폭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. 보나 혹독했다.

② 노무노원의 기위, 입안, 조성: 일본에서 직접

한국에서의 집행기관: 조선총독부->국민총력조선연맹(군, 관, 민의 참여)

③ 노동력이동(특히 해외이동)은 극히 힘들었다.

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단기구: 10호단위의 班, 내부성동첩, 「조선인도향저지」(1938)

전반적으로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연행

111. 강제사역

① 조사한 전위안부 모두가 연행시 자신이 군위안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.

② 강간에 의한 자포자기: 위안소에 오는 도중, 또는 도착 즉시 군인에 의해 강간당함.

③ 위안부의 일은 계속적인 폭력과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.

- 사용자: 군인만이 배타적으로 사용

- 거부할 경우, 군인이나 관리자에게 폭력을 당함. 지나치게 많은 군인 상대 (주말)

- 자식: 군인이나 헌병이 위안소 감시.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.

- 정기검진, 정검검사: 군에서 정기적으로 행함. 608호 '강제주입(불인화)'

- 채무의식 강압, 모수에 대한 기대, 경쟁조장

(모금수령에 있어서의 규정과 실제의 차이)

- 군에서 식량, 기타 물품을 보급한 경우 (위안소 형태와의 관련)

- 위안소가 이동하는 경우, 예외없이 군의 수송편이 이용되었다.

- 위안부는 이들을 일본식으로 고치거나 번호로 불리움.

전반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사역

IV. 맺음말

① 정책에 의한 군위안부제도

②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체계적 개입

③ 모집과 경영에서 민간인이 했음 경우에도 군의 통제 가해짐.

④ 연행 - 폭력 또는 사기

위안 - 폭력 또는 사기

⑤ 패전후 위안부의 유기, 사살 (증언) - 강제노원의 당연한 귀결

일본 정부와 군,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노원